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의 안 번 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<br>결<br>사<br>항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0. . .<br>(제 회) |                  |

여 객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시 행 령  
일 부 개 정 령 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김현미<br>(국토교통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0. . .             |

법 제 처 심 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로 인해 버스 및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승객 감소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가 임박한 일부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으로써 사업자들의 대폐차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0. ~ 2020.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의 비고를 가목으로 하고, 같은 호 비고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다음 각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차령 만료 2개월 전에 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 따른 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.

| 차 종       | 사 업 의 구 분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 상 차 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승용<br>자동차 | 여 객 자<br>동 차 운<br>송 사 업<br>용 | 개인택시(경형·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(이하 “차령기산일”이라 한다)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택시(배기량 2,400cc 미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택시(배기량 2,400cc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택시[전기자동차(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. 이하 같다)] |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택시(경형·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택시(배기량 2,400cc 미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에 속하는 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| 일반택시(배기량 2,400cc 이상) |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|
|           |          | 일반택시(전기자동차)          |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|
| 승합<br>자동차 | 그 밖의 사업용 |                      |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|

별표2 제2호 가목 중 “제1호 비고에 따라 2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”를 “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2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 또는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장기간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표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 중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.

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임시검사는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검사로 보며, 차령의 연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

령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차령의 연장이 된 것으로 본다.

③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후단에 따른 차령 연장기간이 1년 10개월 이후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차령이 연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1 - 3832 |